KDA 대한치과의사협회

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치협,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

수 신 : **각 지부 및 대한치과병원협회**

참 조 : **정보통신위원회**

제 목 : **고유식별정보 5만개 이상 보유 치과병·의원 안전조치 실태조사 참여 안내**

1. 귀 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한국인터넷진흥원 '개인정보정책단-2018-2259'호 관련입니다.

3.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 5만개 이상 보유 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실태조사 참여 요청이 온 바,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 및 기관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붙임 : 1. 고유식별정보 5만개 이상 보유기관 안전조치 실태조사 참여 방법 1부.
2.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문 1부.
3.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1부. 끝.

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철 수

과 장 유 광 선 부국장 정 구 찬 국 장 박 주 식

시 행 정보통신 68,6-85 (2018.05.23) 접 수 ( )

우 04802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/ http://www.kda.or.kr

전 화 (02)2024-9114 / 전송 02)468-4655·8 / information@kda.or.kr / 공개

[붙임 1 - 고유식별정보 5만개 이상 보유기관 안전조치 실태조사 참여 방법]

고유식별정보 5만개 이상 보유기관 안전조치 실태조사 참여 방법

(2018. 5.18 / 정보통신위원회)

■ 참여대상 : 고유식별정보 5만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치과병·의원

※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 등을 말함

※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이 5만개 이하인 치과병·의원은 해당 사항 없음(참여 X)

■ 치과병·의원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파악 방법

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트수량으로 파악

- 차트번호가 순차적인 경우 차트 번호 참고 가능

② 전자차트 또는 청구S/W에 저장된 환자수 조회하여 파악

- 프로그램별 조회 기능에 대해 잘 모를 경우 해당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

■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안전조치 관리 실태조사 참여방법 (아래 2가지 중 선택)

선택	① 18년도 치협 자율점검 참여 예정인 경우	② 18년도 치협 자율점검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
비고	- 2018. 7월 이후 시행 예정인 치협 자율점검 참여하여 자율점검표 작성 제출 - 치협 자율점검 참여로 안전조치 실태조사 대체 가능	-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에 접속 후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 등록 - 결과등록 기간 : 2018. 4.30(월) ~ 6.29(금)까지 - 추진일정: 안내 및 결과 등록 4~6월 서면 증빙자료 요구/검토 7~8월 자체점검 결과 확인, 현장점검 9~11월 - 관련문의 : 02-535-8841/unique@kca21.com

※ ②번을 선택한 기관에서는 붙임3 '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'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관련근거

< 개인정보 보호법 >

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·규모,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**

⑤ 행정자치부장관은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**

< 동법 시행령 >

제21조(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
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.

1. 공공기관

2.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**2년마다 1회 이상 조사**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**온라인 또는 서면**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⑤ 법 제24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**한국인터넷진흥원**

2.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·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**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**